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5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이병도, 김성준, 김영철,
남창진, 박강산, 박승진,
박영한, 박철성, 봉양순,
신복자, 아이수루, 유정희,
, 이용균, 이원형, 임규호,
홍국표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「청년기본법」의 개정(2023.3.21.)에 따라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에 운영비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지원기관의 운영비를 포함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규정함(안 제20조제6항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6항 중 “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” 을 “예산의 범위에서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청년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, 자치구에서 ‘서울청년센터’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<u>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20조(청년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<u>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</u> ----- -----.</p>